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6.

발 의 자 : 허종식 · 유동수 · 박찬대
노종면 · 김교홍 · 이훈기
박 정 · 허성무 · 복기왕
이재관 · 최혁진 · 이용우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·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(이하 “적격 비용”이라 한다)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. 현재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.8%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.

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,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.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.3%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 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).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공공성을 갖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
2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전력량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
3. 그 밖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3(가맹점수수료율의 차 별금지 등) ① ~ ④ (생 략)	제18조의3(가맹점수수료율의 차 별금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공공성을 갖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.</u> <u>1.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</u> <u>2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전력량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</u> <u>3. 그 밖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